

장애학생지원규정

제1장 장애학생지원서비스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, 수업, 학내활동, 진로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본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
제 3 조 (장애학생차별금지)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, 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차별신고센터를 학생처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)

제 4 조 (원칙) 장애학생에게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교육, 수업, 학내활동, 진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 5 조 (도서관이용)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.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
2.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등

제 6 조 (장애학생상담) 장애학생의 교수, 학습, 학내활동 및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제 7 조 (도우미제도운영) ①장애학생을 위하여 도우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②도우미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교육기자재지원)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자재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 9 조 (전용시설)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장애학생 전용주차장
2. 장애학생 전용화장실
3.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
제2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

제10조 (구성) ①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학생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10.1., **2021.6.1.**)

③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)

제11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발의한 사항

제12조 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3장 보 칙

제14조 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본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